#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57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이개호 • 이기헌 • 박홍배

정진욱 • 어기구 • 이정문

위성곤 · 서영교 · 김현정

문금주 • 박수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8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서는 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토지의"를 "토지(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지"라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했던 기간과 해당 거주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	득세의 감면) ①
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	
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	
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	
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u>토지의</u> 양도로 인	<u>토지(이하 이 조에</u>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서 "자경농지"라 한다)의
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 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 설>

②・③ (생략)

 	 	 	 - –
 	 	 	 -
 	 	 	 -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가 자 경농지를 직접 경작했던 기간 과 해당 거주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